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(안 제6조의 2)

- 존속기한: 2019년 12월 31일 → 2024년 12월 31일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」
○ 예산조치 :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○ 규제심사 : 규제 사항 없음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○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실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본 조례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5년을 연장하여 해당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